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지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11월 16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7일

3. 제안이유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 이를 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임대(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 임대료를 경감 조치할 수 있으므로 환

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의 조문에 부합되게 규정하였기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 조례안 예고('23. 11. 21. ~ '23. 11. 27.)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6. 검토의견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분 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80%이내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규정하였기에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친환경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차량가격 인하 및 각종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나 무엇보다 충전시설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할 수 있음.

다. 또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에 대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